#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23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 맹성규·문진석·정준호

서삼석 · 강유정 · 윤종군

정일영 · 노종면 · 박홍배

허종식 · 김교흥 · 이훈기

복기왕 • 전현희 • 염태영

황정아 • 백선희 • 김태선

안태준 · 김영배 의원

(20인)

#### 제안이유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음.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되어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설·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69조 제목 및 제1항).
- 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들을 삭제함(안 제69조제5항 신

설 및 제70조 삭제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322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 제목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조정사항,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및 제99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참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72조 및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 え]) ① -----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 하여 국<u>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u>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_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에 따른 건설 · 부동산통 합분쟁조정위원회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②·③(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 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 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조정사항,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 외하고는 「건설 및 부동산 사 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삭 제>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 <u>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

   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 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 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 <삭 제>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없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
  -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 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 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 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삭 제>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 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 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 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 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74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 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

<삭 제>

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삭 제>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 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 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 ③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 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 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 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

<삭 제>

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 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 력이 있다.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69 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진행 한다.
- 1. 제7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 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 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경우
-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 〈삭 제〉 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 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9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 조 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 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 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 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 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 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 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 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 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 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제99조(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3. (생 략)

3의2. · 3의3. (생략)

4. ~ 7. (생략)

7의2. (생략)

8. • 9. (생략)

-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 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 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11. ~ 15. 제68조의4제1항에 11. ~ 15. (현행과 같음)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3의3.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7의2. (현행과 같음)

8. • 9. (현행과 같음)